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검사기준(제14조관련)

1. 검사기준

가. 가공품의 검사

- (1) 축산물의 검사는 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2) 품질검사주기의 적용시점은 제품제조일을 기준으로 한다.
- (3) 검사항목의 적용은 당해 제품의 해당항목에 한한다. 다만, 축산물의 가공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항목을 생략할 수 있다.
- (4) 동일 생산단위별로 1회 이상 성상·이물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5) 가공품의 품목별 성분규격에 대한 검사는 매월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알가공품은 6월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원료의 검사

- (1)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법 제22조에 따른 집유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유가공업의 영업자는 별표 4 제2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유전 검사는 매일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수출용 축산물의 검사기준 등

수출을 목적으로 처리·가공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제1호에 불구하고 수입자가 요구하는 검사기준에 의할 수 있다.

3. 그 밖에 축산물가공업영업자의 검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